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02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김주영 · 박 정

이용우 · 이형석 · 허 영

민형배 • 진성준 • 홍성국

이용선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규민 • 유정주 • 이원택

황운하 · 김남국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, 지적·자폐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·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.

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 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,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 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).

법률 제 호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·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「방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1.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
- 2. 실종 경위
- 3. 실종경보 발령사실
- 4.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,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
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

자,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

구축·운영) ① (생 략) 수색·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 스 및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

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

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의2(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 제9조의2(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·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. 「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, 「방송법」제2조제3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 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1.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
- 2. 실종 경위
- 3. 실종경보 발령사실
- 4.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 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

	<u>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	전기통신사업자, 정보통신서비
	스 제공자, 방송사업자는 정당
	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